

과천시공사 시험 및 심사수당 지급 지침

제정 2020.04.14. 지침 제32호

개정 2020.11.27. 지침 제34호

개정 2021.11.05. 지침 제42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과천시공사(이하 “공사” 라 한다)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및 심사에 종사하는 외부위원에게 지급할 시험 및 심사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의 강사수당(이하 “강사수당” 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11.27.)

제2조(수당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사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
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·편찬·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감독·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4.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5.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종사하는 사람(개정 2020.11.27.)

②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,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이 한다.(개정 2020.11.27.)

제3조(여비) 외부위원이 시험 및 심사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수당 이외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준용규정)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「과천시 시험수당 지급조례」 또는 「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」을 준용한다.(개정 2020.11.27.)

부 칙 (제정 2020.4.14. 지침 제32호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개정 2020.11.27. 지침 제34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일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개정 2021.11.5. 지침 제4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은 시행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1] (개정 2020.11.27., 2021.11.5.)

시험 및 심사수당 지급기준 (제2조제2항 관련)

| 구분 | 지급기준 | 지급대상 |
|------|--|--|
| 시험수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위원 : 200,000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시험위원 - 공무원의 경우,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|
| 심사수당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술자문위원 : 300,000원 - 투자심사위원 : 300,000원 - 성과심사위원 : 200,000원 - 소청심사위원 : 200,000원 - 제안서평가위원 : 200,000원 - 고충처리심의위원 : 200,000원 - 연구용역심의위원 : 200,000원 - 계약심의위원 : 200,000원 ※ 결정문 등 작성시 300,000원 추가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심사위원 - 공무원의 경우, 당해 공무원이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|

※ 수당은 1회 기준 지급액이며, 참석시간 2시간 이상시 50,000원 추가지급

[별표2] (신설 2020.11.27.)

강사수당 지급기준 (제2조제2항 관련)

가. 강사수당 지급기준

| 등급 | 적용대상 | | 지급기준(만원) | |
|-----|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| 일 반 | 공직자 등 | 최초 1시간 | 초과 매시간 |
| 특1급 |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| 장관급*, 광역자치단체장* 대학총장(장관급) 국회의원* | 40 | 30(20*)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30) | |
| 특2급 | 전직 차관(급)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| 차관급, 대학총장(차관급)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| 30 | 20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20) | |
| 1급 |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(의장 포함) 유명 예술인·종교인,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·기관·단체의 임원, 중역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의사,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(취미·소양·외국어·전산 강사 제외)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|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(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) 언론인 | 25 | 12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12) | |
| 2급 |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, 기업·기관·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|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| 15 | 8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8) | |
| 3급 | 외국어, 전산 등 강사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 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| | 10 | 5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5) | |
| 4급 |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| | 8 | 4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4) | |
| 5급 | 각종 교육운영(실기실습 등) 보조자 | | 6 | 3 |
| | | | (시간보상수당 3) | |

- 주) 1. 세미나, 심포지엄,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
2.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
3. ‘공직자 등’ 이란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(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) 규정이 적용됨
4.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(5-가 참고),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「청탁금지법」 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
5. ‘공직자 등’ 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.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
6.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-2호(2016.9.28.)를 참고하여 적용
7. 체육,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, 기타 특강, 일반강좌,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
8.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(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, 인천대학교 등)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
9. ‘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’ 기준
- 가. 출연연구기관 :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»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»,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(KDI,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경기연구원 등)
- ※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기관은 적용 안 됨
- 나. 부연구위원 :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,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·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

나. 강의시간 산출기준

| 강의 시간 | 1시간 이하 | 1시간 초과 ~ 2시간 이하 | 2시간 초과 ~ 3시간 이하 | 3시간 초과 ~ 4시간 이하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산출기준 | 1시간 | 2시간 | 3시간 | 4시간 |

주)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

※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

다.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

| 과 정 | 수강 인원 | 할 증 륜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1개 과정 | 100인 이상 ~ 250인 미만 | 20% |
| | 250인 이상 | 30% |
| 2개 이상 과정 합반 | 250인 미만 | 20% |
| | 250인 이상 | 30% |

주)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

라.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

-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(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)
-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(단,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)